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82호 2021. 1. 19.(화)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2호	지족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고시 .....	1
남해군 고시 제2021-3호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	3
남해군 고시 제2021-4호	도로명주소 고시 .....	5
남해군 고시 제2021-8호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	8
남해군 고시 제2021-9호	남해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신 관광휴양형)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승인 고시 .....	10
남해군 고시 제2021-10호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고시 .....	23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24
남해군 공고 제2021-11호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8
남해군 공고 제2021-12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0
남해군 공고 제2021-13호	공시송달 공고 .....	46
남해군 공고 제2021-2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48
남해군 공고 제2021-24호	남해 힐링빌리지 민간사업자 공모 .....	49
남해군 공고 제2021-26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51
남해군 공고 제2021-56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	52
남해군 공고 제2021-5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54
남해군 공고 제2021-58호	남해군관리계획(엔스케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재공람·공고 .....	55
남해군 공고 제2021-59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	61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1 - 2호

지족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족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지족항 어촌뉴딜사업
- 2. 사업의 목적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도모
- 3. 사업비 소요액 : 6,940백만원 (국비 4,858, 지방비 2,082)  
 자부담 58백만원 (수익시설에 대한 자부담)
-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 물양장정비, 선착장 정비, 콘크리트 부잔교, PE부잔교, 방파제 보강, 죽방렴테크 경관조명, 어항 경관조명
    - 특화사업 : 어민행복센터 조성, 선셋 다기능센터, 1980테마간판 정비, 파크렛정원

# 남 해 군 공 보

(2) 제 682 호

2021년 1월 19일

조성, 야간주차거리 조성

- S/W사업 :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일원 (지족항)

5. 사업예정기간 : 2020년 ~ 2022년 (3년간)

6. 사업의 효과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8.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사업비	비고
① 공통사업	물양장 정비	83.0	
	선착장 정비	210.0	
	부잔교 설치	390.0	
	방파제 보강	960.0	
	경관조명 설치	165.0	
	<b>소 계</b>	<b>1,808.0</b>	
② 특화사업	어민행복센터 조성	380.0	
	선셋 다기능센터 조성	2,592.0	
	1980테마간판 정비	120.0	
	파크렛정원 조성	150.0	
	야간 주차(酒車)거리 조성	72.0	
	<b>소 계</b>	<b>3,314.0</b>	
③ S/W사업	지역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역협의체 운영	340.0	
④ 부대비용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위탁수수료 등	1,490.0	
<b>합 계(①+②+③+④)</b>		<b>6,940.0</b>	

※ 사업내용은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기본계획 열람장소

기본계획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남해군 고시 제2021 - 3호

### 양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벽련, 두모, 소량, 대량마을)
- 4. 사업(변경)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마을회관
      - [건축] ( “변경없음” ) 건축 1동(A=330㎡), 비품설치 1식
      - [토목]
        - ▶ 당초 : 부지조성 2,648㎡, 건물(2층, 연면적330㎡) 1동, 비품설치, 부대공사, 조경석 208㎡, 잔디식재 1,436㎡, 난간 37경간, CCTV 및 캐노피 등 부지정비 1식
        - ▶ 변경 : 부지조성 2,648㎡, 건물(2층, 연면적330㎡) 1동, 비품설치, 부대공사, 조경석 313㎡, 잔디식재 1,057㎡, 전망테크 156㎡ 등 부지정비 1식
    - 대량마을 진입로 확포장(변경없음) : L=110m, B=6.0~8.0m
    - 소량마을 안길확장(변경없음) : L=85m, B=4.0m

○ 지역경관개선

- 소량마을 경관공원조성

▶ 당초 : 부지조성 22,124㎡, 배수로 정비, 산책로 정비 490m(콘크리트 포장), 전석 502㎡

▶ 변경 : 부지조성 22,124㎡, 배수로 정비, 산책로 정비 490m(흙콘크리트 포장), 전석 537㎡

- 벽련마을 진입로정비(변경없음) : 안전난간 124m, 노폭확장 100m, 교행로 2개소

- 안내판 설치(변경없음) : 10개소

- (신규사업) 두모 야생화꽃길 진입로 정비(L=415m, B=5m)

○ 지역소득증대

- (당초) 특산물판매체험장 1개소(A=150㎡) → (변경) 사업삭제

○ 지역역량강화계획(변경없음)

- (당초) 교육 및 견학, 홍보 및 컨설팅, 정보화 및 마을경영 각 1식

- (변경) 교육 및 견학, 홍보 및 컨설팅, 정보화 및 마을경영(사업조정), 체험마을 지정 컨설팅(추가)

5. 총 사 업 비(변경없음) : 4,200백만원(국비 2,940, 지방비 1,260)

6. 사 업 기 간(변경) : (당초) 2014년 2월 ~ 2020년 12월 → (변경) 2014년 2월~ 2021년 6월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5)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4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5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41 외 3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1 - 8호

##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50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폐지)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남해군보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12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및 남해군 보건소(☎055-860-8749)에 비치]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2) 결정(변경:폐지)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회복지시설	남해읍 아산리 150번지 일원	6,537	감) 6,537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폐지)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회복지시설	○ 폐지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노유자시설→의료시설) 변경을 통한 치매안심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남해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폐지) 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2021 - 9호

## 남해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상신 관광휴양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0-6호(2020.01.09.)로 고시된 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동대만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월 12일

남 해 군 수

1.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2. 면 적 : 205,400㎡(변경없음)
3. 남해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관리계획(상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변경없음)

1.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1	상신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상신매립지)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3.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100.0		
체육시설 용지	체육시설소계	56,090	감)347	55,743	27.1		
	체육시설	33,724	증)1,928	35,652	17.3		
	소공원	2,023	감)2,023	-	-		
	승마장	10,567	증)1,195	11,762	5.7		
	주차장	2,780	증)287	3,067	1.5		
	조경·완충녹지	6,996	감)1,734	5,262	2.6		
관광휴양 시설용지	관광휴양소계	27,590	감)19,235	8,355	4.1		
	진입및상징광장	8,030	감)8,030	-	-		
	특산물판매장	2,850	감)2,850	-	-		
	먹거리장터	3,590	감)3,590	-	-		
	휴게음식점	3,000	감)3,000	-	-		
	주차장	850	감)850	-	-		
	자동차야영장	3,080	감)3,080	-	-		
	관리도로	1,980	감)1,980	-	-		
	간이역	4,210	-	4,210	2.1		
	보물섬레일파크	-	증)3,100	3,100	1.5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	증)1,045	1,045	0.5		
	공공시설 용지	공공시설소계	11,900	증)2,240	14,140	6.9	
		주차장	7,410	감)291	7,119	3.5	
도로		4,490	증)2,531	7,021	3.4		
녹지용지	녹지소계	109,820	증)17,243	127,162	61.9		
	녹지(유수지)	91,710	감)2,031	89,679	43.7		
	조경·완충녹지	18,110	감)7,443	10,667	5.2		
	공원	-	증)26,816	26,816	13.0		

3.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2.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6	중로3-1	상신리 1-1답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단지내 도로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	중로3-1	상신리 1-7	일반 도로	-		단지내 도로
신설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상신리 353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		구역내 L=420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호선	-	○ 폐지 - B=8m, L=246m	○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신설 - B=8m, L=36m	○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신설
-	소로3-51호선	○ 신설 - B=6.5, L=1,897m	○ 농어촌도로(창선207호선) 개설에 따른 노선신설

3.2.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2,780	증)287	3,067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폐지	2	-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1답 일원	850	감)850	-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3	2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0-27답 일원	5,230	-	5,230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	4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2,180	감)291	1,889	경상남도고시 제2007-487호 (2007.11.2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1	○ 면적감소(증287㎡) - 2,780㎡ → 3,067㎡	○ 승마장 부지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적증가
-	주차장2	○ 폐지(A=850㎡)	○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주차장 폐지
2	주차장2	○ 시설번호 변경(3 → 2)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번호 변경
3	주차장3	○ 면적감소(감291㎡) - 2,180㎡ → 1,889㎡ ○ 시설번호 변경(4 → 3)	○ 광장 및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차장 면적감소

3.2.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동대만 생태공원	문화 공원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	증)26,816	26,816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동대만 생태공원	○ 신설 (A=26,816㎡)	○ 생태를 주제로 한 자연체험, 생태탐방, 생태관 광 및 생태 학습기회 등을 제공하는 복합테마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3.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m <sup>2</sup> )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sup>2</sup>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5,400	-	205,400				205,400	-	205,400	
-	I	56,090	감)347	55,743	I-1	I-1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33,724	증)1,928	35,652	체육시설
					I-2	-	창선면 상죽리 10-8번지 일원	2,023	감)2,023	-	
					I-3	I-2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10,567	증)1,195	11,762	체육시설
					I-4	I-3	창선면 상죽리 10-9번지 일원	2,780	증)287	3,067	체육시설
					I-5	I-4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6,996	감)1,734	5,262	체육시설
-	II	27,590	감)19,235	8,355	II-1	-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8,030	감)8,030	-	
					II-2	-	창선면 상신리 1-8번지 일원	2,850	감)2,850	-	
					II-3	-	창선면 상신리 1-5번지 일원	3,590	감)3,590	-	
					II-4	-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00	감)3,000	-	
					II-5	-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850	감)850	-	
					II-6	-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80	감)3,080	-	
					II-7	-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980	감)1,980	-	
					II-8	II-1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	4,210	-	4,210	관광 휴양시설
					-	II-2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	증)3,100	3,100	관광 휴양시설
					-	II-3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	증)1,045	1,045	관광 휴양시설
-	III	11,900	증)2,240	14,140	III-2	III-1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	4,490	공공시설
					III-3	III-2	창선면 상신리 10-27번지 일원	5,230	-	5,230	공공시설
					III-4	III-3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2,180	감)291	1,889	공공시설
						III-4	창선면 상신리 1-23번지 일원	-	증)297	297	공공시설
					-	III-5	창선면 상죽리 10-1번지 일원	-	증)2,234	2,234	공공시설
-	IV	109,820	증)17,342	127,162	IV-1	IV-1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91,710	감)2,031	89,679	녹지
					IV-2	-	창선면 상신리 347-1번지 일원	6,890	감)6,890	-	
					IV-3	IV-2	창선면 상신리 5-4번지 일원	5,220	증)347	5,567	녹지
					IV-4	IV-3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6,000	감)900	5,100	녹지
					-	IV-4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	증)26,816	26,816	녹지

3.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3.4.1. 기정

체육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2	용도	지정용도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3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승마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용도	지정용도	진입 및 상징광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용도	지정용도	특산물판매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용도	지정용도	먹거리 장터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4	용도	지정용도	휴게음식점(관광식당)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6	용도	지정용도	자동차야영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8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3.4.2. 변경

체육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2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승마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이하	
		용 적 률	100%이하	
		높 이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3	용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I-4	용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용도	지정용도	보물섬레일파크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	Ⅲ-1 Ⅲ-4 Ⅲ-5	용 도	지정용도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Ⅲ-2 Ⅲ-3	용 도	지정용도	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녹지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Ⅳ	Ⅳ-1 Ⅳ-2 Ⅳ-3	용 도	지정용도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Ⅳ-4	용 도	지정용도	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용 적 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높 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4.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26,816	100.0	
도로 및 광장	6,216	23.2	
조경시설	399	1.5	
휴양시설	1,888	7.0	
유희시설	966	3.6	
교양시설	1,011	3.8	
편익시설	943	3.5	
공원관리시설	75	0.3	
녹지 및 기타	15,318	57.1	조경·완충녹지

☑ 시설별 조서

구분	시설명	기호	부지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비고	
총계			26,816			
시설면적			11,498			
도로/광장	소계		6,216			
	도로		4,160			
	광장	가-1		453		
		가-2		473		
		가-3		426		
		가-4		425		
가-5			279			
조경시설	소계		399			
	습지탐방로	나-1	216			
		나-2	183			
	꽃잎트렐리스	①		1		
	꽃잎조형물	②		6		
	보행교	③		1		
	데크탐방로	④		1		
휴양시설	소계		1,888			
	잔디광장	다-1	1,260			
	휴게쉼터	다-2	339			
	데크쉼터	다-3	289			
	퍼골라	⑤		7		
	막구조퍼골라	⑥		7		
	휴게트렐리스	⑦		1		
	유희시설	소계		966		
테마놀이터		라	966			
그물놀이대		⑧		1		
교양시설	소계		1,011			
	테마정원	마-1	563			
		마-2	290			
		마-3	158			
편익시설	소계		943			
	지역특산물장터	바-1	750			
	먹거리쉼터	바-2	193			
공원관리시설	소계		75			
	관리사무소	사-1	60		매표소 포함	
		사-2	15			
녹지/기타	소계		15,318			
	녹지		15,318			

남해군 고시 제2021 - 10호

##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고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등의 준공검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4일

###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북변천(소하천)
2. 시 행 자 : 남해군수(지역활성과)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남해군 LPG 배관망사업을 위한 관 매설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4-2번지 외 21필지
6. 점용면적 : 영구점용 133.52㎡  
일시점용 728.52㎡
7. 점용기간 : 2019. 12. 20. ~ 영구(일시점용: ~ 2020. 12. 31.)
8. 착 공 일 : 2020. 8. 13.
9. 준 공 일 : 2020. 9. 30.
10. 준공검사일 : 2021. 1. 1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1 - 4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덕신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96번지 외 51필지(붙임 참조)
- 2. 출입기간 : 2021. 1. 5 ~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재난안전과 (☎055-86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지조서 1부. 끝.

용 지 조 서

공 사 명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전 체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권 자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상주	상주	2211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2	남해	상주	상주	2073	담	635	372	장경0	부산 사하구 괴정동	
3	남해	상주	상주	산315	임	7,603	44	정신0 백우0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4	남해	상주	상주	2196-25	친	7,452	549		국(국토교통부)	
5	남해	상주	상주	2072	담	746	214	김정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6	남해	상주	상주	2196-24	체	582	26		국(기획재정부)	
7	남해	상주	상주	1709-1	체	1,878	772		남해군	
8	남해	상주	상주	1722	체	17,941	411		남해군	
9	남해	상주	상주	1733	모	1,018	143	최두0	-	
10	남해	상주	상주	1728-1	담	289	21		남해군	
11	남해	상주	상주	1728	담	303	303		남해군	
12	남해	상주	상주	1727-1	담	387	33		남해군	
13	남해	상주	상주	1727	담	73	60		남해군	
14	남해	상주	상주	1718	담	727	245	김준0	서울 양천구 신정동	
15	남해	상주	상주	1795	담	364	159	최춘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6	남해	상주	상주	1796	담	658	351	정진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17	남해	상주	상주	2196	친	44,802	2,617		국(국토교통부)	
18	남해	상주	상주	1797	담	3,779	526	이준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9	남해	상주	상주	1798	담	1,097	308	김제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	남해	상주	상주	1789-1	도	1,690	325		남해군	

용 지 조 서

공 사 명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진 체 면 적 (㎡)	평 임 면 적 (㎡)	소 유 권 자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21	남해	상주	상주	2196-19	답	104	21		경상남도	
22	남해	상주	상주	2196-8	답	194	44		국(국토교통부)	
23	남해	상주	상주	2196-9	제	267	75		국(국토교통부)	
24	남해	상주	상주	2203	도	6,393	50		국(국토교통부)	
25	남해	상주	상주	2129	답	294	106	김인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6	남해	상주	상주	2131	답	723	182	최춘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27	남해	상주	상주	2131-2	답	870	281		남해군	
28	남해	상주	상주	1709	답	654	20		남해군	
29	남해	상주	상주	1710-1	답	473	133	김춘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0	남해	상주	상주	1711	답	962	362	김옥0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31	남해	상주	상주	1713-3	답	598	36	박화0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32	남해	상주	상주	1713-2	답	397	30	박화0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33	남해	상주	상주	1713-1	답	10	5	김춘0	서울 강동구 진호동	
34	남해	상주	상주	1715	답	982	116	최춘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5	남해	상주	상주	1716	답	843	473	박춘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36	남해	상주	상주	1717	답	2,264	129	박동0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37	남해	상주	상주	1681	답	2,324	352	이러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38	남해	상주	상주	1680	답	694	44	강원0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39	남해	상주	상주	1678	답	235	235	이러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40	남해	상주	상주	1677	답	499	72	박성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용지 조서

공사명 : 전골들소하천 정비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권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41	남해	상주	상주	1676-1	답	797	89	박성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2	남해	상주	상주	1675	답	714	22	손남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3	남해	상주	상주	1674	답	251	228	손남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4	남해	상주	상주	1676-2	답	1,478	38	손남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5	남해	상주	상주	1673-1	답	142	22	장진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46	남해	상주	상주	1669-1	답	519	210	송성0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7	남해	상주	상주	1668	답	1,464	64	문정0	부산 사하구 장림동	
48	남해	상주	상주	1672	답	939	292	장진0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로	
49	남해	상주	상주	1671	답	1,394	60	김민0	진주시 하대동	
50	남해	상주	상주	1671-1	도	292	194		남해군	
51	남해	상주	상주	1660-3	도	553	190		남해군	
	합계					120,407	11,714			

남해군 공고 제2021 - 11호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중 시상구분과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이 10년 전 2010년에 제정되어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상 및 시기”를 “시상”으로 변경함(조례 제3조)
  - 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 제3조제1항 ~ 제4항)
    -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 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 문화관광과장” 을 “ 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남해문화회장, 남해문인회  
장” 로 변경함(조례 제5조제4항)

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1호 ~ 제3호)

- 1. 시(시조): 대상, 신인상
- 2. 소설: 대상, 신인상
- 3.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 가 있는 사람)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1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8882, 팩스 055-860-888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전화 055-860-888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이” 를 “남해군이” 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상) ①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

② 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문화관광과장” 을 “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남해문화회  
장, 남해문인회장” 으로, “군수” 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연도로 한다.” 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회에서” 를 “문학상 운영  
에” 로 한다.

2. 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최 및 주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이하 “문학상” 이라 한다)은 <u>군</u>이 주최 및 주관한다.</p>	<p>제2조(주최 및 주관) ----- ----- <u>남해군이</u> -----.</p>
<p>제3조(시상 및 시기) ① <u>문학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문학상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다.</u></p> <p>② <u>시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u></p>	<p>제3조(시상) ① <u>문학상의 시상부문은 시(시조), 소설, 특별상으로 한다.</u></p> <p>② <u>문학상의 시상식은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u></p> <p>③ <u>문학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상 후보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④ <u>그 밖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조(시상부문) ① <u>문학상은 창작과 평론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② <u>남해유배 관련 작품과 연구에 기여한 사람에게 특별상을 줄 수 있다.</u></p>	<p>&lt;삭 제&gt;</p>
<p>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u>위원은 남해문화원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에 전문지식과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u>군수가 위촉한다.</u> 다만, 심사대상자 및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u></p>	<p>제5조(문학상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관광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남해문화회장, 남해문인회장</u>----- --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u>-- -----.</p>

현 행	개 정 안
<p>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해당연도로 한다.</u></p> <p>⑥ <u>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는 별도의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2. <u>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u></p> <p>3. 그 밖에 <u>위원회에서</u> 필요한 사항</p> <p>&lt;신 설&gt;</p> <p><u>제11조 ~ 제13조</u> (생 략)</p>	<p>⑤ ----- <u>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제6조(위원회의 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심사위원과 추천위원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u></p> <p>3. ----- <u>문학상 운영에</u> -----</p> <p><u>제11조(문학상심사위원회) ① 시상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심사대상 작품의 추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u></p> <p><u>③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2조 ~ 제14조</u>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p>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를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상종류)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시조): 대상, 신인상
2. 소설: 대상, 신인상
3.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제3조(수상후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시(시조) 및 소설: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품
2. 특별상: 문학 관련 단체, 문학가, 개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의 제목 “(문학상심사위원회 등)”을 “(문학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6항”을 “제11조”로, “심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한다)의”로, “심사위원은”을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으로, “심사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심사위원”을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문학상 장르별”을 “문학상의 부문별”로 한다.

③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제3호 중 “선정” 을 “추천 및 선정”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 1명과 장르별 우수상 2명, 특별상 2명 이 내” 를 “부문별 대상과 신인상 각 1명”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배문학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수상” 을 “남해군이 출간한 수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p>
<p>제2조(시상 구분)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르별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li> <li>2. 소설</li> <li>3. 희곡</li> <li>4. 수필</li> <li>5. 평론</li> <li>6. 아동문학(동시와 동화 포함)</li> <li>7. 유배문학 특별상</li> </ol>	<p>제2조(시상종류)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시조): 대상, 신인상</li> <li>2. 소설: 대상, 신인상</li> <li>3. 특별상: 유배문학 특별상(유배문학과 남해군 문학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li> </ol>
<p>제3조(수상후보 작품)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후보 작품은 최근 3년 이내 창작된 작품과 평론을 대상으로 한다.</p>	<p>제3조(수상후보) 남해군 김만중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수상 후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시조) 및 소설: 최근 2년 이내 창작된 작품 중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작품</li> <li>2. 특별상: 문학 관련 단체, 문학가, 개인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ol>
<p>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 등) ①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문학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심사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4조(문학상심사위원회) ① ----- 제11조----- ----- 위원장----- ----- ----- 구성하고, 10명 이내의 추천위원을 둘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심사위원장은 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며, <u>심사위원</u>은 문단 등단 경력 10년 이상인 작가 또는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문학단체의 추천을 받아 <u>심사위원</u>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p> <p>&lt;신 설&gt;</p> <p>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로 한다.</p> <p>④ 문학상 장르별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 략)</p> <p>3. 수상 후보자 <u>선정</u></p> <p>4. (생 략)</p> <p>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u>대상 1명과 장르별 우수상 2명, 특별상 2명 이내의</u>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lt;단서 신설&gt;</p> <p>1. 2. (생 략)</p> <p>②·③ (생 략)</p>	<p>② ----- 한다)의 ----- 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 <u>군수</u>가 -----.</p> <p>③ <u>심사위원과 추천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u></p> <p>④ 심사위원과 추천위원-----.</p> <p>⑤ <u>문학상의 부문별</u> -----.</p> <p>제5조(심사위원회 기능)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추천 및 선정</u></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상 후보자 선정) ① ----- <u>부문별 대상과 신인상</u> 각 1명----- <u>다만, 유배문학 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위원회가 직접 심사하여 선정한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저작권) ① <u>수상</u> 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번역·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5년 동안 군에 귀속된다.</p> <p>② (생 략)</p>	<p>제9조(저작권) ① <u>남해군이 출간한 수상</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1 - 12호

##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5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중 전시실이 연습실로 변경되어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시실”을 “연습실”로 변경함(운영조례 제3조제2호)  
나. 별표 시설명 “동호회실”을 “연습실”로 변경함(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1년 1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882, 팩스 055-860-888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전화 055-860-8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연습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전시실</u></p> <p>3. <u>동호회실</u></p> <p>4. ~ 6. (생 략)</p>	<p>제3조(시설)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연습실</u></p> <p>&lt;삭 제&gt;</p> <p>4. ~ 6. (현행과 같음)</p>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1. 사용료(다목적실, 연습실, 악기연습실)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실)	면 적 (㎡)	사용료(1시간/실)		비 고
		주 간	야 간	
다목적실(1)	77.6	7,000	10,000	1. 사용기준시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21:00  2. 가산요율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연습실(4)	1	3,000	4,500	
	2	1,000	1,500	
	3			
	4			
2				
악기연습실(2)	1	3,000	4,500	
	2	1,000	1,500	

2. 사용료 반환(다목적실, 연습실, 악기연습실)

반 환 기 준		
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	1.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남해군 공고 제2021 - 13호

### 공시송달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24-1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4. 공고기간 : 2021. 1. 5.~ 2021. 1. 19.(14일간)
- 5. 공고내용
  - 협의기간 : 송달일 ~ 2021. 2. 29(금)까지
  - 협의장소 : 남해군청 재무과 (☎055-860-3188)
  -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보상금 수령용, 이전등기용), 주민등록초본1부(주소변동사항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관계서류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6. 공시송달 대상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 지	지번 분할전	지 목	지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 관계	
1	남해군 서변리	51	대	116	116	울산시 중구 당산 5길 41(우정동)	정미영				지분 2/9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43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51	주택	벽돌조 스라브지붕 (9.5×8.4-3.2×3-2-5 ×1.2)	62.2	m <sup>2</sup>	2/9	울산시 중구 당산 5길 41(우정동)	정미영		
	“		창고및 화장실	블럭조 스라브지붕 (3×1.5)	1	식	2/9	“	“		
	“		가추	벽체이용선라이트지붕 (2×2)	4	m <sup>2</sup>	2/9	“	“		
	“		창고 (옥상소재)	블럭조 스라브지붕 (3×2)	6	m <sup>2</sup>	2/9	“	“		
	“		물탱크 (옥상)	FRP(大)	1	식	2/9	“	“		
	“		대문	철재(문주2)	1	식	2/9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1.5×8+5×5+4×5+2×2 )	61	m <sup>2</sup>	2/9	“	“		
	“		화단	1.2×5×0.5(H)	1	식	2/9	“	“		
	“		계단	콘크리트 (1×6)	1	식	2/9	“	“		
	“		수도		1	식	2/9	“	“		
	“		감나무	R25	1	주	2/9	“	“		
	“		대추나무	R15	1	주	2/9	“	“		

7. 기타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재무과 (☎055-860-318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21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신재0	주소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
소하천명		원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1559번지(1230-1번지 인근)		
	면적	1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1. 1. 5.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우수관 매설 및 우수관 매달기		

남해군 공고 제2021 - 24호

## 남해 힐링빌리지 민간사업자 공모 (관광휴양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남해군에서 시행중인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 남 해 군 수

□ 공 모 명 : 남해 힐링빌리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 사업개요

-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5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년~2021년(8년)
- 사업내용 : 172,323㎡(약 52,000평)
  - 공 공 : 기반조성(도로, 상하수도 등), 힐링센터, 공원 등
  - 민 자 : 관광숙박시설(45,015㎡)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힐링빌리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자사업자 공모
  - 면 적 : 49필지 45,015㎡(13,617평)
  - 세부내용 : 관광숙박시설 유치
  - 허가조건 :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4층이하 12미터 이하)
- 공모기간 : 2021. 1. 6.(수) ~ 3. 8.(월)
- 신청자격 :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2개 이상의 법인)
  - 자본금 4억원 이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직접 운영할 업체

- \* 각 출자자의 지분을 5%이상, 최대출자자 최소 25% 초과
- 그 밖의 세부신청자격은 공모지침서를 따름

□ 추진일정

○ 사업설명 : 개별방문

- 기간 : 2021. 1.11.(월) ~ 1.15.(금) 18:00까지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사업참가의향서(서식25) 제출

- 기간 : 2021. 1. 25.(월) ~ 1.29.(금) 18:00
- 장소 : 남해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FAX(스캔본 이메일 가능)

• fax : 055-860-3748, 이메일 kimyk77@korea.kr

(송부후 ☎055-860-8613, 김연경 주무관)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필요

\* 사업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가능

○ 질의/응답 : 질의 접수기한 2021년 1월 29일(금) 18:00까지

-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서(서식 22)를 이용하여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송부후 유선으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fax : 055-860-3748, 이메일 kimyk77@korea.kr

- 질의에 대한 응답은 참가의향을 제출한 전부에게 일괄 공지합니다.

질의/응답내용은 지침의 효력을 가짐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평가 : 사업신청자에게 일정 별도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시 : 2021년 3월 8일(목) 09:00 ~ 18:00

나. 장소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기타

○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의 책임입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평가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제출자는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모지침서에 따르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의 결정에 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1 - 26호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7조(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현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1년 1월 8일

남 해 군 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단위 : 명)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단위 : 명)	비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자)		
38,728	38,712	16	775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21 - 56호

###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53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창선 진동	258,400	2021.01.19 2031.01.18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59	정경규	제79호 재개발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sup>2</sup>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79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창선 진동	258,400	2011.01.19 2021.01.18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59	정경규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남해 정치 제 153 호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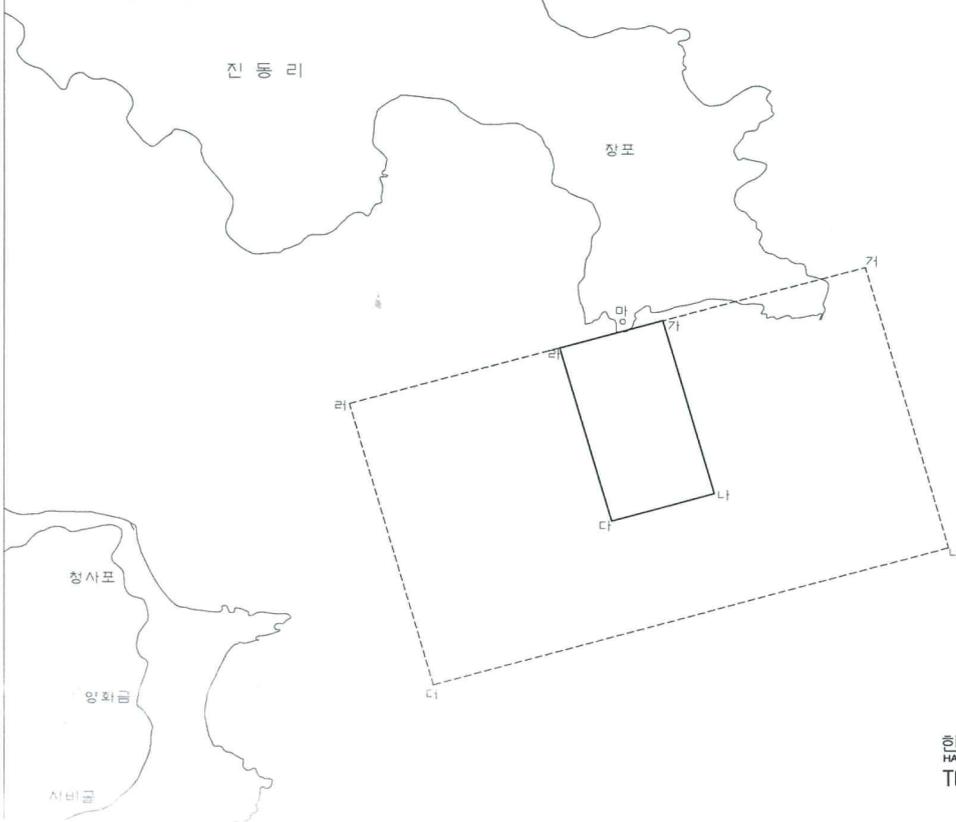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마) N 34-49-42.203, E 128-04-45.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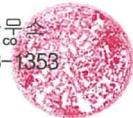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58,400 m<sup>2</sup>

보호구역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위 도	경 도	거 리
거	34-49-49.088	128-05-19.181	가	34-49-42.366	128-04-50.822	가나 680
너	34-49-14.784	128-05-31.206	나	34-49-21.185	128-04-58.317	나다 380
더	34-48-57.393	128-04-19.258	다	34-49-17.731	128-04-43.964	다라 680
러	34-49-31.892	128-04-07.099	라	34-49-38.911	128-04-36.468	라가 38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1 - 57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진영*	주소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소하천명		개린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749번지(146-105 인근)		
	면적	1 m <sup>2</sup>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sup>2</sup>
	기간	2021. 1. 14. ~ 2025. 12. 31.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배수관로		

남해군 공고 제2021 - 58호

##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9일

###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붙임
3. 관계도서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4. 공람·공고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방법
  - 남해군 도시건축과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개인(단체)은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엔스태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33,182	33,182		
신설	-	엔스태이	특정	남해군 남면 평산리 558-2번지 일원	-	증)33,182	33,18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신설	-	남해군 남면 평산리 558-2번지 일원	33,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및 유희시설 조성을 통해 남해군 동서지역 균형발전 및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li> </ul>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33,182	33,182	100.0	
특정시설용지	-	증) 19,501	19,501	58.8	
숙박시설	-	증) 13,949	13,949	42.1	
유희시설	-	증) 5,552	5,552	16.7	
녹지용지	-	증) 10,918	10,918	32.9	
기타녹지	-	증) 10,918	10,918	32.9	
공공시설용지	-	증) 2,763	2,763	8.3	
도로	-	증) 2,086	2,086	6.3	시설결정 : 2,033m <sup>2</sup>
광장	-	증) 677	677	2.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141	2,033	-	-	-	-	-	-	1	141	2,033	
중로	1	141	2,033	-	-	-	-	-	-	1	141	2,033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3	국지 도로	141	남면 평산리 555-2	남면 평산리 산 117	일반 도로			

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A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li> <li>B=13m, L=141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로를 기반시설로 결정</li> </ul>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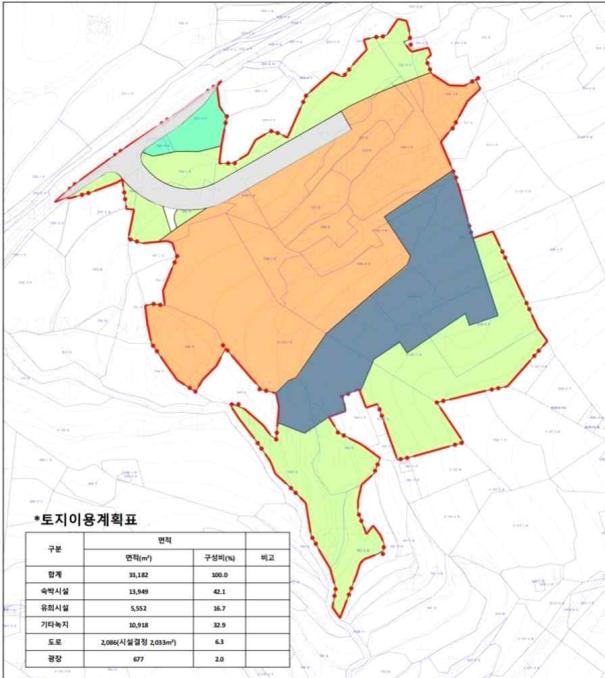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1	19,501	1-1	평산리 558-2 전	13,949	숙박시설
			1-2	평산리 558-8 전	5,552	
2	2	78	평산리 556 전		78	유희시설
3	3	591	평산리 554-5 답		591	기타녹지
4	4	677	평산리 521-2 전		677	광장
5	5	2,554	평산리 556-1 임		2,554	기타녹지
6	6	4,530	평산리 558-5 전		4,530	
7	7	3,165	평산리 561-6 전		3,165	

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특정시설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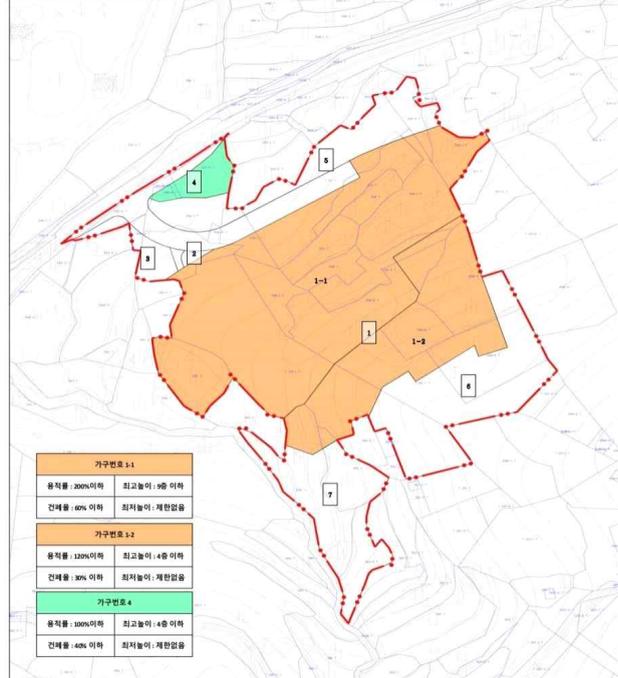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1-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9층 이하 / 40m 이하	
		배치	주변경관에 순응하며 일조 및 해안경관 확보에 유리하도록 배치(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형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스카이라인 유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색채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건축선	-	
		1	1-2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주변경관에 순응하며 일조 및 해안경관 확보에 유리하도록 배치(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형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스카이라인 유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색채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4	광장          4-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의 휴게시설 및 사목의 공중 화장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주변경관에 순응하며 일조 및 해안경관 확보에 유리하도록 배치(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형태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적절한 스카이라인 유도(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색채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건축선	-	

<붙임2> 토지이용계획(안)



남해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남해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남해군 공고 제2021 - 59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하였기에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 남 해 군 수

1. 노선지정 공고

구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기정	창선	리도	창선 207호선	207	창선면 상신리 352-2	창선면 오용리 1243-1	1.9	-	-	-	미개설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변경	창선	리도	창선 207호선	207	창선면 상신리 353	창선면 오용리 1243-10	1.9 (A=19,484m <sup>2</sup> )	-	6.5	6.5	

# 남해군관리계획(도로:소로3-51호선) 결정(변경) 조서

## □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1	6.5	국지 도로	1,897	창선면 상신리 353	창선면 오용리 1243-4	일반 도로			농어촌도로 (창선207호선)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3-51	○ 노선신설 B=6.5m, L=1,897m	○ 농어촌도로 창선207호선 개설을 위하여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도로)으로 결정하고 자 함

## 남해군계획시설(소로3-51호선)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 오용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3-51호선)사업
  - 명 칭 : 농어촌도로(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A= 19,484㎡
  - 규 모 : B= 6.5m, L=1,897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 명 : 남해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의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7. 관계도서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계							185,008	19,484					
1	남해	창선	상신	353		도	15,406	526	국토교통부	국			
2	남해	창선	상신	352	5	전	86	86	남해군	공			
3	남해	창선	상신	352	3	전	833	15	김*석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남로 46, 102동 1909호			
4	남해	창선	상신	352	9	전	290	290	남해군	공			
5	남해	창선	상신	349	1	전	250	250	남해군	공			
6	남해	창선	상신	347	3	답	188	188	남해군	공			
7	남해	창선	상신	348	1	답	27	27	천*호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1000 금산홍한골든빌 108-102			
8	남해	창선	상신	1	29	답	14	14	남해군	공			
9	남해	창선	상신	347	4	잡	27	27	남해군	공			
10	남해	창선	상신	347	1	계	332	260	국토교통부	국			
11	남해	창선	상죽	10	31	잡	35	35	재무부	국			
12	남해	창선	상죽	10	32	잡	45	45	재무부	국			
13	남해	창선	상죽	10	1	계	2,120	1,700	국토교통부	국			
14	남해	창선	상죽	10	33	잡	52	52	재무부	국			
15	남해	창선	상죽	10	34	잡	115	115	재무부	국			
16	남해	창선	수산	103	1	계	144	144	국토교통부	국			
17	남해	창선	수산	101	3	전	22,064	114	국토교통부	국			
18	남해	창선	수산	97		전	28	28	남해군	공			
19	남해	창선	수산	97	1	전	144	144	남해군	공			
20	남해	창선	수산	102	3	입	495	495	남해군	공			
21	남해	창선	수산	95	1	전	119	119	남해군	공			
22	남해	창선	수산	96	1	묘	154	154	남해군	공			
23	남해	창선	수산	98	1	전	397	397	임*명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09			
24	남해	창선	수산	92	1	전	32	32	남해군	공			
25	남해	창선	수산	93	1	전	375	375	양*용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234			
26	남해	창선	수산	94	2	전	1,028	1,028	정*봉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89			
27	남해	창선	수산	94	3	전	713	713	강*순	부산 동래군 온천동 307-6			
28	남해	창선	수산	87	1	전	269	269	남해군	공			
29	남해	창선	수산	88	3	전	65	65	남해군	공			
30	남해	창선	수산	86	1	전	563	563	남해군	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의권리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1	남해	창선	수산	84	1	전	551	551	남해군	공			
32	남해	창선	수산	85	1	답	346	346	남해군	공			
33	남해	창선	수산	83	1	전	42	42	남해군	공			
34	남해	창선	수산	75	3	답	500	500	남해군	공			
35	남해	창선	수산	75	4	답	865	865	남해군	공			
36	남해	창선	수산	74	2	전	112	112	남해군	공			
37	남해	창선	수산	73	1	전	286	286	남해군	공			
38	남해	창선	수산	72	4	전	59	59	남해군	공			
39	남해	창선	수산	61	1	전	198	198	남해군	공			
40	남해	창선	수산	60	1	전	106	106	남해군	공			
41	남해	창선	수산	59	1	대	12	12	남해군	공			
42	남해	창선	수산	59	2	대	4	4	남해군	공			
43	남해	창선	수산	55	1	답	2,003	10	학교법인 창선학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70			
44	남해	창선	수산	55	2	염	101,176	164	학교법인 창선학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70			
45	남해	창선	수산	551		계	5,921	2,495	농림축산식품부	국			
46	남해	창선	수산	55	113	염	17	17	학교법인 창선학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70			
47	남해	창선	오용	550		구	5,940	48	농림축산식품부	국			
48	남해	창선	오용	1343		구	14,151	64	농림축산식품부	국			
49	남해	창선	오용	1281	21	대	20	20	김*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3			
50	남해	창선	오용	1282	3	전	21	21	김*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18			
51	남해	창선	오용	1282	5	임	81	81	남해군	공			
52	남해	창선	오용	1282	4	대	59	59	남해군	공			
53	남해	창선	오용	1281	54	대	301	301	김*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18			
54	남해	창선	오용	산2	39	임	77	77	김*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18			
55	남해	창선	오용	산2	37	임	188	188	남해군	공			
56	남해	창선	오용	1254	3	전	457	457	남해군	공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의권리		비고
	군	면	리	본번	부번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7	남해	창선	오용	1254	2	전	70	70	김*선	마산시 합포구 자산동 17-1 경남아파트 509호			6/34
									장*규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0-18			4/34
									남해군	공			24/34
58	남해	창선	오용	1255	6	전	1	1	남해군	공			
59	남해	창선	오용	산2	35	임	894	894	남해군	공			
60	남해	창선	오용	산2	41	임	188	188	남해군	공			
61	남해	창선	오용	1253	1	답	388	388	남해군	공			
62	남해	창선	오용	1252	1	답	1,088	1,088	남해군	공			
63	남해	창선	오용	1246	2	답	299	299	남해군	공			
64	남해	창선	오용	1245	1	답	518	518	남해군	공			
65	남해	창선	오용	1243	6	답	350	350	남해군	공			
66	남해	창선	오용	산4	1	도	997	100	경상남도	공			
67	남해	창선	오용	산4	5	임	1	1	경상남도	공			
68	남해	창선	오용	1243	8	답	88	88	경상남도	공			
69	남해	창선	오용	1243	10	답	67	67	경상남도	공			
70	남해	창선	오용	1243	5	답	1	1	남해군	공			
71	남해	창선	오용	1243	2	도	56	19	남해군	공			
72	남해	창선	오용	1242	2	도	50	10	경상남도	공			
73	남해	창선	오용	1242	3	답	49	49	경상남도	공			